

부산지방법원 2023. 7. 5 선고 2021가단32327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4. 11. 8 선고 2023나56774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3. 7. 5 선고 2021가단323271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

담당변호사 김상근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

담당변호사 성락인

변론종결 2023. 5. 31.

판결선고 2023. 7. 5.

주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1. 18. 체결된 증여계약은 40,788,56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.

2. 피고는 원고에게 40,788,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 중 1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0,788,560원 및 그 중 1,388,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3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18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3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(이하 ‘이 사건 채권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6. 8. 30. ‘C는 원고에게 19,988,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’을 명하는 판결(부산지방법원 2016소42770호, 공시송달로 진행)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. C는 위 판결에 대하여 2021. 11. 5. 추완항소하면서 ‘자신은 추심업체인 D 주식회사를 통해 이 사건 채권을 7,000,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7,000,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소멸하였다’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(부산지방법원 2021나1381호)은 2022. 8. 31. ‘C가 6,500,000원만을 지급하고 500,000원의 이행을 지체한 상태에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감액합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’고 하여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(2023. 1. 10. 그대로 확정)하였다.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액은 2023. 3. 15. 기준 40,788,560원이다.

C는 2013. 3. 29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

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 있었다. C는 2021. 1. 18. 이 사건 부동산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(이하 '이 사건 증여'라 한다) 2021. 1. 20.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채무자 C, 근저당권자 E주식회사, 채권최고액 73,200,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채무자 C, 근저당권자 F, 채권최고액 28,000,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②번 등기가 2021. 1. 18.자 해지를 원인으로 2021. 1. 19. 말소되었다.

C는 이 사건 증여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이 없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, 3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해운대구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의 성립

C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(피고는 C가 추심업체인 D 주식회사를 통해 이 사건 채권을 7,000,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C가 7,000,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.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감액약정은 C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)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C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를 되찾아온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.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원상회복의 방법 · 범위

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증여 이후 된 사실이

인정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다.

- 이 사건 변론 종결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25,000,000원(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)(A)
- 말소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8,000,000원과 남아 있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3,200,000원(B)
- 남아 있는 공동담보 금액 123,800,000원($C=A-B$)
- 2023. 3. 15. 기준 원고의 채권액 40,788,560원(D)
- 가액배상 범위 40,788,560원($D= C$ 와 D 중 적은 값)

다. 소결론

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1. 18. 체결된 증여계약은 40,788,56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40,788,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조정민

[별지]

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부산 부산진구

[도로명주소] 부산 부산진구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공동주택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

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39.72㎡

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 종류 1, 2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 비율 1785950분의 5236

